

202.50 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 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 2-B 조 제 29-a 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 명령 202.30과 202.40으로 발령된,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법률 및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지속합니다. 이는 2020년 8월 8일까지 30일 동안 행정 명령 202.30에 포함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동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 법 2-B 조의 제 29-a 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8월 8일 토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행정 명령 202.48에서 지속 및 수정되고 확대된 바와 같이 소매 쇼핑물의 모든 실내 공공 공간 폐쇄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 202.5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이러한 쇼핑물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행한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주의 재개 4단계에 해당하는 주 지역에서 쇼핑물을 개장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2020년 7월 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